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부(과)회의 운영 규정

제정 2012. 3. 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부(과)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학부(과)회의는 학부(과)별로 위원장 1명을 두고, 학부(과)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부(과)회의를 구성한다. 제3조(심의사항) 학부(과)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다른 학교(외국의 자매결연 대학 등 외국대학 포함)·연구기관·산업체 및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행한 교육·연구 또는 실습 등의 학점 인정
  - 2. 편입생 선이수교과목 지정
  - 3.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이수교과목 지정
  - 4. 재입학시 성적의 인정
  - 5. 전부(과)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평가 인정
  - 6.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심사에 필요한 사항
  - 7. 성적 인정 등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학부(과)회의를 소집하고 학부(과)회의의 의장이 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5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학부(과)장 보직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소집) 학부(과)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제7조(의결 정족수) 학부(과)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다만, 학부(과)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.
- 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(과)회의 심의를 마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(제9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